# 거창승강기R&D센터 출연 심의(안) - 승강기시험인증 활성화 -

의 안 번 호 2017-

제출연월일 : 2017. 10. .

제 출 자 : 거창군수

#### 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따라,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강기 시험・인증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금을 2018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거창승강기R&D센터 시험・인증 운영체계 활성화를 통해 승강기 허브도시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# 2. 출연개요

- 근거법령
  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38조 및 제41조
  - 「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」제5조 및 제14조
  - 거창승강기R&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3조(2013.12.20)
- 대 상: 한국산업기술시험원(거창승강기R&D센터)
- 사 업 비: 100백만원(군비)
  - 2018년 예산편성 요구사항

(단위:백만원)

	사업기간	2017년 예산액	2018년 요구액	재 원 별						
				계	국 비	도 비	군 ㅂ	וו	민	간
	2018년	-	100	200			1	00		100

#### ○ 사업내용

- 승강기 시험·인증 업무 활성화
  - ·거창승강기R&D센터 시험실 작업·연구환경 개선
  - ·테스트타워 시설 환경안전 개선
  - 승강기 시험인증관련 세미나 개최, 기술자료 배포
  - ·기업지원용 시험 · 인증업무 지그제작, 재료구입
  - ·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시험장비 부대시설 구축, 장비 업그레이드 교정
  - •시험인증분야 신규 사업 개발
- 거창승강기밸리 홍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
  - · 승강기밸리 홍보/마케팅 팜플렛 제작 · 배포
  - · 승강기 테스트타워를 활용한 밸리 홍보

#### 3. 부서의견

○ 거창승강기R&D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남도, 거창군, 한국산업 기술시험원, (재)경남테크노파크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따라 승강기제품 시험・인증 및 성능평가, 해외인증, 엔지니어링 등 승강기분야 지원업무 활성화, 거창승강기밸리 홍보 강화 및 거창 승강기R&D센터의 자립화 기반확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거창군은 거창승강기R&D센터가 경남 서북부지역의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군비 출연금 100백만원 교부가 타당함

#### 4. 참고사항

- 출연 기관현황: 붙임 1
- 관계 법령: 붙임 2

### [붙임 1]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# 한국산업기술시험원(거창승강기R&D센터)

)	w = v	۸) _)	전화번호 : 080-808-0114						
설립근거	법률 : 산업기술혁신촉진법 41조						홈페이지 : www.ktl.re.kr		
주요연혁	1966년 : 1983년 : 1989년 : 1999년 : 2006년 : 2015년 :	기업기술 품질평기 산업기술 한국산업	기타공공기관 (산업통상자원부 출연기관)						
인원현황 #17.12	계				정규직	비정규직			
('16.12. 현원기준)	862명			719명			143명		
	직 책 (직책명	, , ,	명 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	임 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
임원	기관징 (당연직	1 01	00	한국	산업기술시험원 원장		2017.10.26		
('17.9.기준)	비상임이사								
	비상임김	사							
주요기능	(한국산업기술시험원) -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관으로 시험인증과 기술지원을 통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(거창승강기R&D센터) - 승강기 KC안전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/ 제품개발 지원/ 해외인증획득 지원 / 수출시장개척 지원 / 네트워크 등 승강기분야 One-Stop 통합지원 솔루션 제공								
자본금 <sup>*</sup> (단위:백만	1」 간원) (직전		88,929 년연도말 기준)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-		
최근3년간	연도	2015	2016	2017	재무현황	자산	169,973 (자산 총액)		
예산 현황	예산액	135,317	133,090	_	(백만원)	부채.	81,044 (부채 총액)		
(단위:백만원)	지자체 지원액	100	100	-	'16.12.31기준	자본	88,929 (자본금 총액)		
경영성과	총수익	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	
(단위:백만원) '16.12.31기준	133,090				135,109		-2,019		

#### [붙임 2] 관련법령

##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(약칭: 산업기술혁신법)

[시행 2017.9.15.] [법률 제14592호, 2017.3.14., 일부개정] 산업통상자원부(산업기술정책과), 044-203-4515

제38조(한국산업기술진홍원의 설립 등)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홍원(이하 "기술진홍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3.8.6.>
- 1.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
- 2.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
- 3.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
- 4.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
- 5.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
- 6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
-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-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<u>「민법」</u>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1조(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)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·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(이하 "시험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기술진흥원"은 "시험원"으로, "제3항 각 호의 사업"은 "제2항 각 호의사업"으로 본다.

####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

(기업지원과) (시행일 : 2017.05.10)

( 제정) 2009.10.07 조례 제1941호 (전부개정) 2011.08.08 조례 제2043호 (일부개정) 2014.12.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 조

(일부개정) 2017.05.10 조례 제2367호

제5조(지원사업의 범위) 군수는 밸리 조성 및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육성
- 2. 승강기산업집적화 단지, 연구소, 생산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
- 3. 승강기 기술개발,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, 상업화 기술개발
- 4. 승강기대학 및 승강기R&D센터 특성화, 국제교류 및 협력, 기업정보화
- 5. 승강기산업단지 조성 · 분양 및 임대사업
- 6. 승강기 인력양성, 승강기산업 창업보육, <u>승강기산업 생산지원 확충사업, 승강기</u>제품 시험·인증사업
- 7. <u>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교류협력·마케팅·홍보·전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</u>하는 사업

제14조(승강기R&D센터 지원) ① 군수는 승강기R&D센터가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장비 지원 등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